

공공공사 물량 80% 상반기에 풀린다

기관·지자체 2조7천억원 조기 발주 경제 활성화- 25일 설명회 개최

올해 도내에서 공공공사로 3조4,249 249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공공공사

역원이 풀린다. 계획 물량에 비해 6,146억원이 줄어든

도로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에 따르면 것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공사

올해 도·시·군 및 유관기관 등 총 60개 등 각종 대형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

기관에서 계획한 공사량은 3,676건으 으로 풀이된다.

이 중 건설공사는 3조2,832억원, 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고속도로, 철

계용역은 1,417억원 등으로 총 3조4, 도,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다양한 사

249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공공공사

계획 물량에 비해 6,14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공사

등 각종 대형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고속도로, 철

도,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다양한 사

업을 추진하며 올해 도내에서 296건 5,

193억원의 공사를 계획해 단일 공공기

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2,723억원,

강원도(2,55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1,735억원), 도교육청(1,

733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1,589억원),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1,

581억원) 등도 1,000억원 이상을 발주한

다. 도내 18개 시·군은 총 2,301건 1조5,

151억원의 공사를 계획 중이다.

특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조기에

유도하기 위해 1분기 2,505건 1조8,975

억원, 2분기 966건 8,327억원 등 상반기

에만 3,471건(전체의 94.4%), 2조7,302

억원(79.7%)이 발주될 예정이다. 한편

도로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올해 발주예

정 공사의 추진상황 및 세부계획을 발표

하기 위한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

획 설명회'를 25일 오후 2시 원주아모르

컨벤션웨딩에서 개최한다. 하위언기자

특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조기에

유도하기 위해 1분기 2,505건 1조8,975

억원, 2분기 966건 8,327억원 등 상반기

에만 3,471건(전체의 94.4%), 2조7,302

억원(79.7%)이 발주될 예정이다. 한편

도로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올해 발주예

정 공사의 추진상황 및 세부계획을 발표

하기 위한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

획 설명회'를 25일 오후 2시 원주아모르

컨벤션웨딩에서 개최한다. 하위언기자

영월군 예산 1,333억원 조기 집행

【영월】영월군이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군은 지역내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국가의 정

책기조에 부응하고 하반기 편중

되는 집행현상을 방지, 예산 집행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

년도 예산 조기 집행을 실시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조기 집행 자체 목표를 총

집행대상 2,316억원 중 1,333억

원의 57.5%를 설정, 추진하기로

했다. 1분기 집행 목표액은 총 대

상액의 42%인 615억원을 설정했.

다. 매일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해

공개함은 물론 매주 목요일에 부

군수를 단장으로 조기 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실시해 목표 대비

이행실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

다.

고종학 군 기획감사실장은 “연

초부터 계획적이고 선제적인 조

기 집행을 추진, 지역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상반기

목표액을 초과 달성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광희기자

김광희기자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7월 착공

사업비 35억 투입해 내년 하반기 준공 계획

1만8082㎡ 규모 장례체험장·공연장 등 조성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이 2018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전 준공을 위해 오는 7월 공사에 착공된다.

횡성군은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우천면 정금리 회다지 소리 문화마을내 부지 1만8082㎡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면적 1243㎡규모의 횡성회다지 소리 문화체험관을 조성한다.

체험관 주요시설은 회다지 소리 실내 공연장, 장례체험장, 교육장, 숙소 및 식당 등이 들어선다.

횡성군은 현재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기본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

에 착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인 2017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횡성회다지소리 문화마을에는 횡성회다지 소리 문화체험관 이외에 횡성지역의 독특하고 정체성을 살릴수 있는 전통의례를 주제로 한 박물관도 건립된다.

횡성군은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 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심의를 요청했다. 횡성군은 박물관 사업이 확정되면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은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횡성회다지소리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 엘다잉에 대한 삶의 가치를 재생산해 횡성전통의 장례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전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성/권재혁 kwonjh@kado.net

영월군 1333억 조기 집행

영월군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집행대상 2316억원 가운데 57.5%인 1333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1분기 집행 목표액은 총 대상액의 42%인 615억원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매일 집행 상황을 모니터

링한 뒤 공개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김상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조기 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마련해 목표 대비 이행 실적을 집중 점검한다.

또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 입찰을 시행하고 적격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국고보조사업 우선 집행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안전건설 사업 조기 시행

횡성군이 안전건설분야 사업비 499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추진한다.

횡성군이 올 상반기에 추진하는 안전건설분야 사업은 △도로분야 11개 사업 229억원 △하천분야 6개 사업 120억원 △지역개발분야 4개 사업 46억원 △기반조성분야 8개 사업 72억원 △안전관리분야 4개 사업 32억원이다.

군은 사업을 조기에 발주, 영농기 이전까지 준공을 완료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횡성/권재혁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 이행 시 구상권 면책이어도 변제자대위는 가능?

Q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내부출자비율은 4:6)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물건축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도급받았는데, 공사의 시공과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A, B사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C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인 지자체에 제출하였다. 그 후 A, B사는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하였고, 발주자는 A, B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B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후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B사가 회생절차 외중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A사는 하자 전부에 대하여 보수를 이행하였다. A사는 자신이 하자보수 전부를 이행하였으니 내부적으로 B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인 하자보수비의 60%를 C사에 대하여 청구하고자 한다. 한편 A사는 B사의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본 사례에서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로서 내부출자비율이 4:6으로 정해져 있었고, 하자보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원래 A사가 하자보수비를 전액 부담하였다면 내부적으로 B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60%에 대하여는 B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B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B사에 대하여 종래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리하면 그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이 회생계획안에 들어가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난 후 그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A사는 B사의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회생절차에서는 A사의 구상권이 현재 발생되어 있지 않아도 이미 공동수급체가 구성되어 시공을 하여 하자보수의 원인관계는 성립되었으므로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A사의 B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이 되고, 더 이상 A사는 B사에 대하여 구상권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민법에는 변제자대위라는 제도가 있다. 즉 민법 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하고, 482조는 “전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변제자대위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A사는 B사와 연대채무자로서 B사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으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B사에 대한 하자보수 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B사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C사는 B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의 지위에 있으니 발주자가 C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하자보수의 보증채무를 A사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다만 이러한 이론구성에 대하여는, 위 변제자대위라는 것은 A사의 구상권 효력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 A사가 위에서 보듯이 B사의 회생절차에서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을 상실하였으니 이에 따라 변제자대위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고, 실제 사안에서 1,2심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출자로 다른 연대채무자와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 A사가 B사의 회생절차에서 장래 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그 구상권에 대하여 B사가 면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며, 따라서 A사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지자체)가 C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다214970).

이는 연대채무자로서 변제한 자의 권리를 타 연대채무자의 보증인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입장이 드러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박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